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등 일괄개정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정부조직법」,「민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칙의 별표, 별지 서식을일괄 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등록번호란 등 개정)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중 주민등록 번호 수집에 관련한 본문, 별표,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 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6항 단서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 본문 중 "교육과학기술부"를 "교육부"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제2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
제48조제2항제2호 중 "노동부장관"을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
[별표]

<u>규칙 중 별표 별지서식 개정사항</u>

연번	부서별	자치법규명	정비대상 서식	개정사항
1	감사담당관	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	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2	기획예산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	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3	기획예산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	별지 제8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4	지역경제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	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5	일자리정책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	별지 제3호서식	주민/사업자번호 ⇨ 사업자번호
6	보육지원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	제7조제1항 별표 2	별지 제2호서식 ☆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 ☆ 생년월일 별표 2 ☆ 병지 서식
7	문화체육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	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□ 생년월일
8	청소행정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 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	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9	청소행정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	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0	주택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	양식 1	양식 1 ☆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☆ 생년월일
11	도시계획과	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 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 규칙	별지 제1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▷ 생년월일
12	공원녹지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	별지 제1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
연번	부서별	자치법규명	정비대상 서식	개정사항
13	교통정책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시행규칙	별지 제1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4	주차관리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	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5	재난안전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시행규칙	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6	총무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	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7	총무과	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 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 에관한규칙	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8	총무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	별지 제1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9	총무과	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 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 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	별지 제1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		서오트병시 가나그	별표 1	구분 중 "3호"란 삭제
			별지 제1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			별지 제2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20			별지 제3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			별지 제4호서식	(1면, 4면) 주민등록번호
				(2면) 호적초본 ⇨ 기본증명서
				(2면) "신원증명원"란 삭제
				(3면) 3. 구비서류 중 "주민등록부 초본(전체 이력기재) 또는" 삭제
				(4면) 6. 민간인 신원진 술서 기재요령 삭제

연번	부서별	자치법규명	정비대상 서식	개정사항
21	자치행정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	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22	위생과	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	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	주민등록번호

신・구조문대비표

(제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 규칙)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	제21조(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
면제) ① ~ ⑤ (생 략)	면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	6
및 같은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	
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	
수 있는 자격증(임용예정직급	
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	
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	
다)의 구분은 별표[별표 6] 및	
[별표 7]과 같다. 다만, 구청장	
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	
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	
경우 <u>안전행정부장관</u> 과 협의하	<u>행정자치부장관</u>
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	
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	
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	
있다.	

(제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자료선정 기준) 자료의 선	제8조(자료선정 기준)
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문화체육관광부, 교육과학기	3 교육부 -
<u>술부</u>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	
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	
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	
함. 다만, 이용자 희망 자료가	
도서관 자료 구성 목적에 어긋	
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.	
4. · 5. (생 략)	4.・5. (현행과 같음)

(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)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	제31조(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
의 개발 보급) ① (생 략)	의 개발 보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	②
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	
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	
<u>행정안전부장관</u> 에게 보고하여	행정자치부장관
야 한다.	<u>,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(제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)

구 의	-1) -1 A)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자격기준) ① 구청장이 환	제7조(자격기준) ①
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	
자는 만 20세 이상, 만 50세 미	
만의 신체건강한 자(병역필 또	
는 면제자)로서 다음 각호의 1	
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	2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
	<u>୍</u>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8조(임금지급 방법) ① (생	제48조(임금지급 방법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	②
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	
지급시 공제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저축금(<u>노동부장관</u> 의 인가를	2 <u>고용노동부장관</u>
받은 경우)	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